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094호 2015. 06. 15.(월)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2015-8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7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 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05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변경 열람 · 공고 ----- 33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⑰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 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 8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6. 1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드림로 625-94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6. 1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6-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549-5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625-94 (당하동)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2-5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4로 21 (오류동, (주)해광산업)	2012-10-25	마중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65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10 (경서동)	2013-07-30	보석을 이용한 경관구조계획 개념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3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46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2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28번길 12 (경서동, 리마프라자)	2013-07-30	솔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2-2	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24 (경서동)	2012-10-25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63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7번길 4 (경서동)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6-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 서구 마전동 12블럭 2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5 (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6 (마전동)	건물번호 변경	2008-12-31	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8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6. 1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350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6-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원창동 382-121	중봉대로 350	2015.06.12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왕길동 107-1	봉수대로 1278	2015.06.12	건물 멸실	
3	인천 서구 가좌동 481-1	백범로 622번길 18	2015.06.12	건물 멸실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 예고

### 1. 제정취지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및 복지대책 수립

###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11) 및 FAX(560-27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2.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
3.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시설 교육
4. 장애인 점자교육, 보행교육, 신문보급사업, 전산교육, 컴퓨터보급, 컴퓨터 수리, 보장구 수리
5. 장애인 체육대회, 워크숍, 인권개선 사업
6. 장애인 문화누리(체험, 관람)사업
7.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사업현황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률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7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변경된 명칭 및 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재구성 추진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시스템 및 기관 명칭 변경사항 변경
  -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
  - 실·과장으로 구성된 위원을 국·소장으로 상향조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 3. 의견 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73) 또는Fax(56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를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실·과·소·동장 등을”을 “부서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내부윤리활동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과·소장”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담당”을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으로 10인”을 “장으로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직윤리관리”를

“공직자 자기관리”로,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10인”을 “세입, 주요 인허가 업무 부서의 장 등으로 1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호라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나목 중 “자료를”을 “자료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를 “처리독려, 지시사항 입력,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및 승인처리를 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년”을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매분기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직윤리관리”를 “공직자 자기관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를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서”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를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접근권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접근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u>안전행정부</u>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u>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u>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p> <p>3. 4. (생 략)</p> <p>5. “<u>공직윤리관리시스템</u>”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6. 7. (생 략)</p> <p>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u>실·과·소·</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행정자치부</u> ----- -----<u>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따라</u>----- ----- ----- -----.</p> <p>3. 4. (현행과 같음)</p> <p>5.<u>“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이</u> <u>란</u>----- ----- ----- ----- -----.</p> <p>6. 7. (현행과 같음)</p> <p>8.----- -----<u>부서를</u>-----</p>

동장 등을 말한다.

9. ~ 12. (생략)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 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과·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

-----.

9.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방향) ① -----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

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 다. (생략)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안전행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

-----  
-----  
-----  
-----  
장-----.

2.-----  
-----  
-----  
-----장으로 10명-----  
-----.

3.공직자 자기관리-----  
-----  
-----세입, 주요 인허가 업무 부서의 장 등으로 10명--.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지정) -----  
-----  
-----  
-----  
-----.

1.-----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행정자치부-----

시 서구와의 협약  
 마. ~ 사. (생 략)  
 2.·3. (생 략)  
 4. 실무책임자  
 가. (생 략)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  
 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 (생 략)  
 5. 관리자  
 가. (생 략)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  
 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  
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  
하여야 한다.  
 다. (생 략)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  
 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  
 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  
 제11조(자기진단) ① (생 략)

-----  
 마. ~ 사.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가. (현행과 같음)  
 나.-----  
 -----  
자료에 대한-----  
 -----.  
 다. (현행과 같음)  
 5.-----  
 가. (현행과 같음)  
 나.-----  
 -----  
 -----처리독려,  
지시사항 입력, 조치결과  
에 대한 확인 및 승인처리  
를 하여야--.  
 다. (현행과 같음)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  
 -----  
 -----  
 -----행정자치부  
 -----  
 -----.  
 제11조(자기진단) ① (현행과 같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 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나. (생략)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

음)

② -----  
-----  
따라-----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지정) ① -----  
-----  
-----  
-----  
-----  
-----.

1.-----

가.·나. (현행과 같음)

다.연-----  
-----  
-----  
-----

2.-----

가.-----  
-----  
매분기 실시한다.

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생략)

3. 정보화부서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15조(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라. (생략)

2. 실무부서

나. (현행과 같음)

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제15조(시스템 운용) ① -----  
-----  
-----공직자 자기관리-----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지정) ① -----  
-----  
-----  
-----  
-----.

1.-----

가.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나.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다.·라. (현행과 같음)

2.-----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 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생략)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가.-----  
-----공  
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  
-----  
-----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서-----  
-----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  
-----  
-----.

②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

③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접근권한-----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된다.

④ 구청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 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  
-----  
-----.

④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 대책) ①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

②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  
-----  
-----  
-----  
-----  
-----  
-----.

제19조(평가) ① -----  
-----  
-----

<p>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공직윤리관리시스템</u>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 · 부서별 윤리활동 실적</p> <p>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u>안전행정부</u>의 확인 ·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p> <p>제21조(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 개선 ·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u>안전행정부장관</u>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행정자치부</u>-----</p> <p>-----.</p> <p>제21조(제도지원) -----</p> <p>-----</p> <p>-----</p> <p><u>행정자치부장관</u>-----</p> <p>-----.</p>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5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인천 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전한마을, 안전증진, 안전한마을 만들기에 관한 용어 정의
- 안전한마을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
  - 안전한마을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용역
  -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설비개선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협의체 구성과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별표1로 정하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안전한마을 만들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전한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한마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3,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마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범죄·생활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을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모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한마을 만들기”란 안전한마을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유·무형적 사업과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마을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마을 만들기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범죄·생활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한마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설비개선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협의체 구성과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별표1로 정하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항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한마을 만들기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한마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실장, 홍보미디어과장, 여성보육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총괄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협의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안전한마을 만들기 대상사업(제4조 관련)

구 분		주민참여 가능 영역	비 고
재난안전영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집중호우 대비 생활주변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지역 등 재해정보 신고·제보 -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발생 후 마을 청소하기 등	
	물리적 환경정비형	- 폭염 시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 강설 시 생활주변 눈치우기 - 시설물 사고전조 감사신고 및 안전조치 등	
범죄예방영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범죄취약지역 밤길안전을 위한 감시·순찰 -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 정비사업지역(재개발), 빈집, 공사장 등 취약지역 점검 - 어린이 등하곶길 안전지도 및 여성안전지도 만들기 등	
	물리적 환경정비형	- 자율방범순찰 운영지역, 범죄발생지점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사각지대용 방법용 CCTV, 보안등 보강 설치 - 주택가 골목길, 놀이터, 공원 등 취약지역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등	
교통안전영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등하곶길 안전지도·계몽(Walking School Bus 등) - 교통사고(자동차, 자전거 등)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 자동차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 보급·대여 등	
	물리적 환경정비형	-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안전횡스 설치 - 시인성 확보시설 설치 - 횡단보도 전방에 미끄럼방지 컬러포장, 야간등화 등	
공동체안전영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우리동네 마을안전지도 만들기 -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 및 자율조직 만들기 - 동네이웃 친구맺기(유사 시 상호보호) -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 안전마을 주민학교 운영 - 전시회, 콘테스트, 안전문화거리축제, 공연, 토론회 등 행사 개최 - 우리동네를 둘러보고 위해요소 조사·발굴하기 정례행사 또는 마을안전감사단 운영 등	
	물리적 환경정비형	- 마을안전감사단 운영, 취약계층 안심보험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기타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 재난안전형, 범죄예방형, 교통안전형, 생활안전형 외에 공모사업에 따른 기타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805호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변경 열람·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변경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5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변경 공고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 우리가 향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의 일정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행위 시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왔으나,

○ 그 보존지역의 광범위한 설정과 장기간에 걸친 보상대책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 나. 대상문화재 및 해당지역

## ○ 시지정문화재( 45 개소)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중복대상)
	번호	종별	시설명		
1	33	기념	검단대곡동지석묘군	서구 대곡동 산123-1	
2	57	기념	김안정묘 및 출토묘비	서구 원당동 53블럭9롯데	
3	58	기념	허암정희량유허지	서구 검암동 산61-5	
4	59	기념	반남박씨종중묘역	서구 대곡동 산151-1	5
5	61	기념	평산신씨종중묘역	서구 대곡동 산120-1	

다. 상세내용 :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

라.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560-4343)

3. 공고(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15. 6. 15~ 7. 6)

## 4. 특기사항

○ 동 허가처리기준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5. 7. 6까지 상기 열람장소(서구 문화관광체육과)로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560-4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서류 : 따로 붙임 (게재 생략)